

창업자금 [] 특례신청서
[] 사용내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1. 기본 사항

수증자	① 성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(전화번호:)		
	④ 증여자와의 관계		⑤ 전자우편주소	
증여자	⑥ 성명		⑦ 주민등록번호	
	⑧ 주소	(전화번호:)		

2. 신청 내용 (※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)

⑨ 수증일	⑩ 재산종류	⑪ 증여재산가액	⑫ 비고

3. 사용내역

증여받은 재산내역			사용내역			
⑬ 수증일	⑭ 재산종류	⑮ 가액	⑯ 사용일자	⑰ 사용용도 및 내역	⑱ 사용금액	⑲ 비고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7조의5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([] 특례신청서, [] 사용내역서)를 제출합니다.

제출자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. 기본사항과 2.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.

2.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. 기본사항과 3.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.

3.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
4.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(예 : 사업용자산 취득,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)를 적고, 사용 관련 증명서류 (예: 취득자산 명세, 대금지급 증빙,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)를 별지에 첨부합니다.

5. ⑲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
6.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신규 고용명세서

※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.

[illegible]